

의안번호	제 83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336 회)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12월 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83
----------	----

제출연월일 : 2014년 12월 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구성·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제9조)
  - 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당연직은 3명 이내)
  - 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한 회의를 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에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무대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안건배부) ①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중 제2조제1항제2호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를 삭제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5.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